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승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1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박승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박철성, 서준오,
송도호, 유정희, 이민옥,
이영실, 이용균, 임종국,
전병주, 정준호, 최기찬,
최재란, 홍국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현행인 최대 6천만원의 지원한도로는 청년,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실효성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려고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을 100분의 4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30”을 “4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)</p> <p>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 내의 전세주택, 보증부월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(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되,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9조(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0 ----- -----,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청년,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의 실효성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려는 것(100분의 30 이내 → 100분의 40 이내)으로, 서울특별시 관련부서(주택실임대주택과) 문의결과 기존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